제25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 2006.9.4~9.15(12일간)

심사보고서

□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

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6.9. 15.기획행정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6년 8월 25일

연만흠의원 외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06년 8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253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2차기획행정위원회(2006.9.6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

Ⅱ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자 : 연만흠 의원)

1. 제안이유

오기된 조문을 정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련조항 명시·조문 표현방식 통일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시 잘못 표기된 안 제24조제3항의 "제29조"를 "제30조"로 정정(안 제24조제3항)

- 나. 관련조항 명시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(안 제41조제2항제3호)
 - O 3.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⇒ 3.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
- 다. 안 제41조제2항제4호 중 조례제정시 잘못 표기된 "제23조제1항, 제2항, 제3항"을 "제24조"로 정정하고, 제3호와 표현 방식을 통일함(안 제41조제2항제4호)
 - 4. 제23조제1항, 제2항, 제3항에 관한 사항 ⇒ 4. 제24조의
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Ⅲ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)

- 본 개정조례안은 오기된 조문을 정정하고,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방식을 통일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
- 안 제24조 및 제41조의 오기된 조문의 정정은 동 조례제정 문안과 현행 조례,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확인 한 바 이는 조례제정시 오기된 조문으로 안 제24조제3항의 제29조는 제30조로, 안 제41조제2항제4호의 제23조는 제24 조로 정정하는 것은 타당하며,
 - ※ 동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제243회임시회(2005.9.5~9.14)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05.9.7)에서 심사하였음.
- O 안 제41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관련규정 명시 및 조문 표현방식을 통일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

- 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※ 안 제41조제2항제4호는 오기된 조문 제23조를 제24조로 정정하고 제3호와 표현방식을 통일하는 것임.
- 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V. 토론요지 : "생략"
- 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Ⅶ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- 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- Ⅸ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4 발의연월일: 2006년 8월 25일

발 의 자 : 연만흠·조영재·강태원

김화동·오용식·송은섭

김법기(7인)

개정이유

오기된 조문을 정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 명시·조문 표현방식 통일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시 잘못 표기된 안 제24조제3항의 "제29조"를 "제30조" 로 정정(안 제24조제3항)
- 나. 관련조항 명시로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(안 제41조제2항제3호)
 - 3.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⇒ 3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
- 다. 안 제41조제2항제4호 중 조례제정시 잘못 표기된 "제23조제1항, 제2항, 제3항"을 "제24조"로 정정하고, 제3호와 표현 방식을 통일함(안 제41조제2항제4호)
 - 4. 제23조제1항, 제2항, 제3항에 관한 사항 ⇒ 4.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발췌

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3항중 "제29조"를 "제30조"로 한다.

제4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
- 4.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24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	제 24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
①(생략)	①(현행과 같음)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	3
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<u>제29조</u> 의	<u>제30조</u>
규정에 의하고,그 외의 필요한	
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	
협의하여 정한다.	
제 41조(감독) ①도지사는 공사의	제 41조(감독) ①
업무를 감독한다.	
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	2
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	
한다.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	3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
<u>사항</u>	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
4. 제23조제1항, 제2항, 제3항에	4.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
관한 사항	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③(생략)	③(현행과 같음)
④(생략)	④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제54조 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4.12.30]

- 第71條(代行事業의 費用負擔)①公社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을 代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한다.
 -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負擔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條例로 정한다.

[本條新設 1980·1·4]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63조 (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)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.
 -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- 1.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, 사전조사,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
 - 2.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·인건비 및 부대경비
 - 3.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

- 4.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
- 5.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
-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,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,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.
-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□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30조(비용의 부담)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.
 - 1.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
 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
 - 3.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
 -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③기타 사업자의 대행사업 비용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.